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발령 안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2020.10.26.자로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료급여 보장기관)에, 각 협회는 회원에게 등 내용을 안내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입원 정액수가 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붙임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
-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장,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자립지원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 사회보장총괄과장, 사회보장조정과장, 사회보장평가과장, 노인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요양보험제도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치매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공공의료과장, 응급의료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 혈액장기정책과장, 한의약정책과장, 한의약산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예비급여과장, 의료보장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구강정책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정신건강관리과장, 자살예방정책과장, 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장), 대구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복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복지인구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복지사업과장),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회장

| | | | | |
|-------|--------------|---------------------------|--------------|---|
| 민간전문가 | 황희숙 | 보건사무관 | 도혜진 | 기초의료보장과전결 2020.10.26. |
| 협조자 | | | | 장 이영재 |
| 시행 | 기초의료보장과-5892 | | | 접수 |
| 우 | 30113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 | / http://www.mohw.go.kr |
| 전화번호 | 044-202-3098 | 팩스번호 | 044-202-3951 | / hhs1023@korea.kr / 대국민 공개 |